



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 유)

제 목 어린이놀이시설 법정안전교육 시행 안내

1.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중앙회에서는 전국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조직 확산과 체계적인 활동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율안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,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전감시원양성과 관리주체 법정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3.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기관인 본 중앙회에서는 『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0조(안전교육)』에 따른 법정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■ 어린이놀이시설 법정안전교육 개요

가. 교육대상 :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

나. 교육시점

-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
-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내
- 안전교육을 받은 날 기준으로 2년에 1회 (※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내)

다. 교육일정 및 장소

교육일시	교육장소	인원
2015. 11. 12 (목) 13:30~17:30	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 (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, 동춘동)	50명
2015. 12. 10 (목) 13:30~17:30	추후공지 (신청하신분은 장소확정 후 개별 연락)	50명

라. 교육내용
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이해
-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놀이시설 안전관리요령
-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별 사고사례 및 사고처리 절차 등

마. 교육비 : 5만원

- 계좌번호 : 국민은행 033237-04-004538 (사)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

※ 수강료는 교육일 1일전까지 입금

※ 교육비는 어린이놀이시설 위해예방과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에 사용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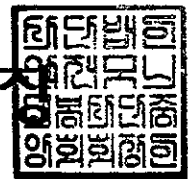
바. 접수방법 : 홈페이지 (www.safetymonitor.kr)에서 사전교육 신청권장

Fax(02-6280-3441), E-mail(safetygd@hanmail.net) 접수가능

※현장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2~3일전에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1. 어린이놀이시설 법정안전교육 신청서 1부.

(사)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



수신자 인천광역시장(안정총괄과장), 인천광역시중구청장(안전관리과장), 인천광역시동구청장(재난관리과장), 인천광역시남구청장(안전관리과장),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(안전관리과장),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(안전관리과장),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(안전자치행정과장),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(안전관리과장),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재난관리과장), 인천광역시강화군수(안전행정과장), 인천광역시옹진군수(행정자치과장)

대 리 김 하 나 과 장 고 민 정 센터장 배 송 수 회 장 김 진 향

협 조 자 인천광역시안전모니터봉사단연합회장 이 영 재

시 행 중앙회 제15 - 323호 (2015. 10. 14.) 접 수 ()

우130-8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81 두산베어스타워 604호 / <http://www.safetymonitor.kr>

전 화 070-4617-2574 / 전 송 (02)6280-3441 / E-mail safetygd@hanmail.net / 공개

